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(조상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63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조상호, 권수정, 김경영,
김경우, 김제리, 김화숙,
박기재, 송재혁, 이병도,
이영실, 이정인 의원(11명)

1. 제안이유

- 코로나-19 바이러스 지역감염 확산이 장기화되고 있고, 지역 내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로 인한 집단감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.
- 상위법인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되면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를 명령하는 권한이 시·도지사까지 확대된 바 있음.
- 따라서 이를 조례에도 반영해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게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9조제2항및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법 제49조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·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